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2.03.01.

개정 2017.06.01.

개정 2017.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게임의 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의 품질관리(QA) 서비스 및 게임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과 연구를 지원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대학의 교지로 하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지 밖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장 센터의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게임성, 기술성, 사양별 성능, 네트워크 테스트 등 게임의 품질관리 서비스 사업
2. 게임 운영지원 서비스 사업
3. 게임 관련 연구 사업
4. 게임 관련 인력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
5. 기타 게임 관련 부대사업

제5조(이용료) ① 센터의 이용료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간접비, 기타비용으로 구성한다.

② 인건비는 게임 QA 및 운영에 참가하는 인력에 대한 시간당 비용이다. 재학생의 경우 산학협력 장학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건비는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기술테스트와 FGT로 구별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장비사용료는 센터 내 장비와 시설에 대한 시간당 비용이다.

④ 간접비는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며 산학협력단의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간접비 징수율은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 제43조 준용하되, 사전협의를 통해 5%내외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기타비용은 2,3,4항 외로 지정되는 비용이다.

제3장 센터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운영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대학의 교직원 4인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별도 통지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조직) ①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학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직제는 겸직가능하다. 단, 교수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업시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센터의 계약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및 간접비
3. 센터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이자수입 등 센터 관련 기타 수입금

제10조(회계 및 감사) ① 센터의 회계와 감사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관리규정과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1조(센터 보안) 센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입구에 보안이 가능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제12조(센터의 출입) 센터의 출입은 센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직원과 행정 인력에게만 허용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